

재해보상과 음주운전 사고

황운희

(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국문초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때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때가 있다.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반사회적, 반공공적인 행위로서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원인이 범죄행위가 원인인 되거나 또는 범죄행위가 곧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死傷)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근로자의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금지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보상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하여 재해근로자를 배척하면, 사회적 위협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이념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는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사회적인 위협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주제어: 업무상재해, 범죄행위, 음주운전, 보험급여, 재해보상

【목차】

- I. 서론
 - II.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금지의 필요성
 - III. 음주운전 사고의 사상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례
 - IV.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 V. 결론
-

I.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지급권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¹⁾ 그리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은 헌법 제32조 제3항이 의미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다.²⁾

산재보험급여 지급권은 ‘사회보장 지급권’으로 보험관장자인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³⁾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재해의 정의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고, 그와 같은 ‘사고와 질병’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비록 업무수행성이 있어도 업무상재해가 아님으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⁴⁾

1)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2)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3)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271 결정

4)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3조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권자가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과는 성격을

보험급여 지급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지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며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⁵⁾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범죄행위로서 자주 접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재해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지만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이나 사망하는 재해(이하 “사상(死傷)”이라 한다.)을 당할 수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상당하는 비율은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⁶⁾ 음주운전은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운전조작능력, 돌발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사회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하다.⁷⁾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⁸⁾ 이상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⁹⁾ 따라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도로 등에서

달리한다. 보험급여 지급제한 규정은 신속한 요양을 저해하는 행위나 장애등급의 재판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보험급여 지급권을 제한한 것이다.(이상국, 『산재보험법(II)』, 대명출판사, 2012, 713쪽.)

- 5) 이상광, 『개정판』사회법』, 2002, 박영사, 804쪽.
- 6)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3/>>, 검색일 : 2016. 3. 20.(여기에 의하면, 2014년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223,552건 중 음주운전사고는 24,043건으로 전체 사고의 10.75%나 되며, 사망 592명, 부상 42,772명이다.)
- 7)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결정
- 8)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있다.(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977.html>, 검색일 : 2016. 5. 9.). 그리고 스웨덴·러시아·폴란드는 0.02%, 일본은 0.03%라 한다. (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31003>>, 검색일 : 2016. 4. 25.).
- 9)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콜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국가는 엄한 처벌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고 2007. 12. 21.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¹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였다.¹¹⁾ 또한 최근에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같이 차에 탄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¹²⁾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반사회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상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선진국들도 계속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주(州)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법원은 종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중죄로 다루며,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¹³⁾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음주운전 사고도 근로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므로 사회보험 수급권이라 하여 근로자보호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 10)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안번호 175878 :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는 2006년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제안되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첫째, 음주·약물 운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약물 운전사고는 그 성격상 다른 교통사고에 비하여 치사율이 높다는 점, 둘째, 일본의 경우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동 죄의 신설에 의한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김정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형사법연구』 통권3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302쪽).
 - 12)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news.joins.com/article/20265258#none>>, 검색일 : 2016. 8. 4.(음주운전방조죄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이 아니라,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의 적용이다.).
 - 13) 박세민,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상으로-」, 『경영법률』 제13집 제1호, 사단법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2, 32~33쪽.

II.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금지의 필요성

1. 취지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튼튼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아울러 피보험자에게도 정직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는 건실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동질서를 유지하고 존중할 필요성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보험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위자를 사회보험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공공성에도 반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그 부담을 이전시켜 보험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보험급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¹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 유발시킨 자에게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¹⁵⁾

판례도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2. 연혁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 한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폐지된『업무상재해 인정기준(노동부예규 제234호, 1993. 5. 6. 개정)』제4조 제1항에서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면서, 같은 제3호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14)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15) 차진아, 「사회보장 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험 수급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제2권 제2호, 사회보장법학회, 2013, 12쪽.

16)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이후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노동부령 제97호) 때에 같은 내용을 제32조 제3호에 규정하였으나, 모법의 근거 없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 1999. 12. 31.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제6100호) 때에 제4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재해”를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모법의 근거를 두었다가, 2007. 12. 14. 산재보험법 전부 개정(법률 제8694호) 때에 제37조 제2항으로 격상시켰다.

3. 보험급여가 금지되는 범죄행위의 범위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를 업무외재해로 한다고 하여 모든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수급권을 금지시키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벗어난다.

형사상의 범죄는 그 자체가 곧 범죄이지만, 행정범죄(범죄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실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유형화한 것이다.¹⁷⁾ 근로자의 행정범죄에까지 보험급여 수급권을 금지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자의 재해 보상을 지나치게 외면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금지되는 범죄행위는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급여 수급권을 배제시키는 범죄행위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공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⁸⁾

여기서의 범죄행위는 보험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⁹⁾

4. 과실범

(1)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절대적 급여제한 사유로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일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부당이득이 된다.²⁰⁾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위법한 보험사고에 대한 제재

1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10판)』, 집현재, 2014, 250쪽.

18) 이상광, 『(개정판)사회법』, 박영사, 2002, 804쪽.

19) 소견영,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 규정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인권과 정의』 제43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147쪽.

20) 정흥기 /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5, 438쪽.

이다.²¹⁾

여기서 ‘고의’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행위가 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고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강행한 경우를 말하고,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을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²²⁾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손쉽게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²³⁾ 국민의 건강보호가 입법 목적이라면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²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²⁵⁾

판례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²⁶⁾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계쟁조항의 ‘범죄행위’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경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험 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²⁷⁾

(2)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때에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제79조)이나 장해보상(제80조)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21)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231~232쪽.

22) 소건영, 앞의 글, 115쪽.

2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24)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25)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2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27)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적정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재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²⁸⁾ 여기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제외한다면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²⁹⁾

사용자에게 재해보상 책임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이외의 요양보상(제78조) 또는 유족보상(제82조)이나 장의비(제83조) 등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 또한 요양보상이나 유족보상·장의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실비율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도 부당이득이 아니며, 사용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³⁰⁾

(3) 소결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자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자해에 준하는 범죄행위 또는 고의·자해에 준하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8) 중앙노동위원회 2003. 5. 1. 판정 2003상병1

29)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주)박영사, 2010, 418쪽.

3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Ⅲ.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상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례

1. 업무상재해 인정 판례

(1) 서울고등법원 1998. 2. 20. 선고 97구16659 판결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1996. 8. 3. 06:00경 택시영업을 위하여 회사 소유의 강원 ○○아○○○○호 스텔라 택시를 운전하여 나갔는데, 그 후 같은 날 23:00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용화해수욕장에 승객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튿날인 08.04. 00:30경 위 회사 당직 근무자인 소외 ○○○에게 “손님을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용화해수욕장 근처의 친구 가게에 들러 술을 한잔 했는데 피곤해서 제시간에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이에 위 ○○○는 “술이 깨면 들어오던지 아니면 아침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어 취한 상태로 느끼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05: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농공단지 앞 왕복 2차선인 7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삼척시내 쪽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은 다음 논두렁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판결 요지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사적 운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입고를 위한 운행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한 택시기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3) 비판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은 다음 논두렁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고발생 자체는 재해자 과실 형태의 사고이다. 당시 회사의 당직 근무자가 “술이 깨면 들어오던지 아니면 아침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어 취한 상태로 느끼지는 아니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음주상태가 측정되지 않아서 당직자의 그와 같은 지시를 근로자가 위반한 것이 업무수행성을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아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1) 사건의 개요

망 소외 1은 소외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5t 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6. 1. 19:30경 위 농장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싣고 직장 동료 1명 및 영농실습생 3명을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출발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강원 횡성군 청일면 춘당 2리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트럭이 춘당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그 운전경위에 대하여 망 소외 1은 같은 날 16:50경 소외 회사 육묘팀 과장인 소외 2와 함께 농장 밖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막걸리 1병을 사서 돌아와 동료들과 나누어 마신 뒤에 19:20경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상급자인 채소팀장 소외 3이 위 트럭을 세운 뒤에 출발을 제지하였으나, 망 소외 1은 “이 정도는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하며 출발하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침 소외 3을 찾는 급한 전화가 와서 소외 3이 전화를 받으려 간 사이 위 트럭을 몰고 출발한 사실, 한편 소외 3이 전화를 받고 있을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육묘생산부 팀장인 소외 5와 함께 외부로 나갔다가 술에 취하여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위 농장 입구에 트럭이 서 있고 망 소외 1 및 동료들이 위 트럭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망 소외 1 등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였다.

2) 판결요지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뒤에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를 위반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 소외 1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비판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 기사가 음주 상태에서 술이 깬 뒤에 차량을 운행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럭이 춘당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에 전복된 고의 형태의 사고이나 음주측정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한 판결 가운데 가장 비난 받을 사례라 여겨진다.

첫째,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³¹⁾

둘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하여, 마치 업무수행중이라면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한다.

셋째, 사고 자체도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고의 형태의 사고임에도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불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은, 이후의 판결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³²⁾”고 한 것과는 결론을 달리 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중의 사고를 업무외재해로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함은 의미가 있으나, 오히려 그 기준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3) 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29373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의 서울 서초구 관내 쓰레기처리 용역작업을 하는 청소차량 운전사로서 ○○기업의 현장감독인 김○○ 이사가 2001. 1. 6. 13:00경 청소차량 운전사들에게 같은 해 1. 7.은 일기예보상 폭설이 예상됨으로 같은 해 1. 8.은 휴일로 인한 작업량의 증가와 눈으로 인한 작업 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출근(05:00까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1. 1. 8. 04:10경 자기 소유의 서울 ○드○○○○호 승용차로 혈중 알콜 농도 0.087%상태로 출근하다가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소재 송정교 위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난간을 충돌한 후 약 2m 높이의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상병명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복부좌상, 하지 마비, 제2, 3, 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다.

2) 판결요지

이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불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 김진수, 「음주로 인한 산재사고의 급여제한 방안에 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275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32)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3) 비판

이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조기 출근 지시를 받고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진 사고로 음주운전과 결빙된 도로가 경합된 사고이다.

법원은 이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상태가 아니라 결빙된 도로가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은 음주운전과 다른 원인이 경합된 교통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로, 이후의 다른 판결들이 음주운전과 기상사정이나 갓길에 주차된 차량 등과 경합된 사건에서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결한 것과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³³⁾

2. 업무외재해 판례

(1) 서울행정법원 1999. 6. 30. 선고 99구8892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7. 1. 4.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운수(주)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8. 4. 10. 16:00경 오후 근무조에 편성되어 다음날 04:00경까지 그에게 배정된 서울○○바○○○○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중임에도 혈중 알콜 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1. 00:45경 승객을 태우고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방면에서 같은 구 일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전하다가 같은 동 초가집 앞의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서울○○바○○○○ 포텐샤 모범택시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목 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뒤에 제5~6 경추 추궁부 골절 및 탈골 상태의 진단을 받고 1998. 5. 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2) 판결요지

고의로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음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 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택시영업을 계속 감행한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3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보기 어렵다.

3) 비판

이사건 사고는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된 것으로 고의 형태의 사고라 할 것이다.

택시운전 근로자가 택시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음주상태는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 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과중한 음주는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의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아직까지도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가 보다는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1) 사건의 개요

A는 0000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수입 및 경비지출 등 주유소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한편, 위 주유소 내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위 주유소는 통상 06:00에 영업을 시작하여 24:00에 영업을 종료하였다.

A는 2005. 12. 3. 14:00경 00동에 위치한 소의 회사 본사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가 끝난 뒤에 같은 날 20:00까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 겸 회식 자리에서 식사와 음주(혈중 알콜 농도 0.103%)를 하였는데, 같은 날 21:34경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회사로 귀소 하던 중 서울 도봉구 00동 000 소재 000갈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방학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 차로의 2차로를 진행해 오던 박OO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에 현장에서 두부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A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비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고의 형태의 사고로서 법원의 판결 요지에 찬동한다.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은 이전의 사건³⁴⁾과는 다른 각도에서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하여 범죄행위로서의 업무외재해라는 법리적 접근은 없다.

(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혈중 알콜 농도 0.205%)를 곁들인 회식을 한 뒤에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다음 날 00:01경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 등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날 12:08경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위 회식이 위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비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 등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원인 경합의 과실 형태의 사고이다.

3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음주운전과 다른 사고원인이 경합된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이 경합하였지만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³⁵⁾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 망 소외 1은 2008. 8. 18. 주식회사 기남테크에 입사하여 CAM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중 2009. 10. 9. 15: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에 있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버디테크에 출장을 갔다. 망인은 버디테크에서 업무를 마치고 2009. 10. 10. 04:40경 기남테크로 복귀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45번 국도에서 짙은 안개로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15.5톤 화물차 후미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6.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망인은 이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2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기지급된 보험급여 61,403,4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요지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5) 이사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뒤에 재해근로자의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사건인데, 대법원도 원처분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수급권자가 입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

3) 비판

이사건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짙은 안개로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15.5톤 화물차 뒤를 추돌한 과실 형태의 교통사고이다.

이사건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및 초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의 판결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음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벌칙 규정과 의학적 소견을 인용하여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재해근로자의 음주, 짙은 안개, 우측 갓길의 정차차량 등이 결합하였음에도 재해자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결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다른 원인이 결합된 사건 가운데 가장 엄격한 판결로 보인다. 아마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5)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³⁶⁾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8. 2. 25.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3. 20. 공사 현장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에 출장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경주에서 식사를 한 뒤에, 같은 달 21. 03:00경 동행한 소외 회사의 이사 최OO의 집으로 가던 길에 경주시 배반동 소재 고속사거리에서 화물차량과 충돌(경찰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원고에게 신호위반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원고가 위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수사기록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원고는 2001.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2001. 12. 6. 위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에, 그로부터 11년이 경과한 2013. 5. 2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 알콜 농도가 0.120%의 주취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36) 이 사건도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11년이 경과한 뒤에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하는 것이 공익상의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2) 판결요지

위 사고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적법하다.

3) 비판

이사건 법원은 혈중 알콜 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근로자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화물차량과 충돌한 고의 형태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3. 판례를 통한 음주운전 사고의 원인별 유형화

위의 판례를 통한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 원인별로 유형화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판례를 통한 음주운전 사고의 원인별 유형화

| 사고 유형 | 구분 | 업무상재해(판결요지) | 업무외재해(판결요지) | 사건번호 | 비고 |
|---|----|--|-------------------------|---|-----|
| 1. 택시 기사가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음(음주 수치 불명) | | 통상적 업무수행중의 사고이다. | | 서울고등법원 1998. 2. 20. 선고 97구16659 판결 | 과실성 |
| 2. 택시 기사가 사거리에서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 사고 (혈중 알콜 농도0.16%) | | | 과중한 음주는 사업주의 지배범위 이탈이다. | 서울행정법원 1999. 6. 30. 선고 99구8892 판결 | 고의성 |
| 3. 화물차 기사가 중앙선을 침범 추월한 사고(음주 수치 불명) | | 음주운전이라 하여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 |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 고의성 |
| 4. 청소차량 운전사가 조출 지시를 받고 출근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짐 (혈중 알콜 농도 0.087%) | | 이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 | 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29373 판결 | 과실성 |

| 사고 유형 | 구분 | 업무상재해(판결요지) | 업무외재해(판결요지) | 사건번호 | 비고 |
|---|----|-------------|--|--|-----|
| 5. 주유소 관리소장이 간담회 겸 회식을 한 뒤에 귀사 하다가 중 중앙선 침범사고 (혈중 알콜 농도 0.103%) | | |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 고의성 |
| 6. 영업부장이 회식을 한 뒤에 기숙사로 가던 길에 기상악화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충돌사고 (혈중 알콜 농도 0.205%) | | |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 과실성 |
| 7. CAM 프로그래머가 출장 중 짙은 안개로 우측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 후미에 충돌하는 교통사고 (혈중 알콜 농도 0.213%) | | | 음주운전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서는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과실성 |
| 8. 토목 기사가 출장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화물차량과 충돌 (혈중 알콜 농도 0.120%) | | |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이다. |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 고의성 |

(1) 범죄행위로서의 판단 기준 정립 미비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에도 법원이 처음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즉,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을 정립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범죄행위로서의 판단보다는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내의 사고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내의 사고인지는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수행중의 사고에는 타당하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판단에는 적합하지 않다. 근로자가 음주상태라 하여도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행위는 범죄행위라기보다는 단지 복무규정 위반의 문제이므로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내의 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산재보험법은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상적 위험 범위의 엇갈림

근로자에 대한 통상적 위험의 범위가 다름도 문제이다. 음주상태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통상적 위험의 범위 내라고 판결하는가 하면³⁷⁾, 음주상태가 측정된 경우에는 음주행위 자체를 업무이탈로 보아 업무수행성을 배제시켰다.³⁸⁾

그리고 중앙선 침범행위는 고의 형태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라고 하면서도³⁹⁾ 주유소 관리소장의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은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일관성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⁴⁰⁾

(3) 음주정도에 따른 차별

위의 판례들을 분석하면 음주정도⁴¹⁾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음주정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혈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업무외재해로 판단하였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정도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면 벌칙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37) 서울고등법원 1998. 2. 20. 선고 97구1665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38) 서울행정법원 1999. 6. 30. 선고 99구8892 판결

39)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40)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41) <표 2> 혈중 알콜 농도와 심신상태

| 혈중 알콜 농도 | 심신상태 |
|------------|--|
| 0.02~0.03% | • 두드러진 변화는 없고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
| 0.05~0.06% | • 이완감, 푸근함을 느낌,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조금 늦어짐 • 민첩한 근육운동이 안 됨 |
| 0.08~0.09% | • 시각, 청각의 저하, 균형감, 언어기능의 저하, 운동조절능력 저하 • 다행감이 생김, 자신감이 커짐 |
| 0.11~0.12% | • 신체균형을 잡기 어렵게 됨;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이 떨어짐 |
| 0.14~0.15% | •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짐 • 말을 더듬게 됨, 시력이 흐려짐, 운동기능 상실 |
| 0.20% | • 운동조절능력 상실(움직이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 • 정신활동의 혼란 |
| 0.30% | •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겨우 가늠 |
| 0.40% | • 의식이 없게 됨 |
| 0.50% | • 깊은 혼수상태 |
| 0.60% | •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자의 음주와 안전』, 2006, 14쪽에서 인용함).

(4) 원인이 경합된 사고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음주운전과 다른 원인이 경합된 사고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진 사고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다.⁴²⁾ 물론 이 사건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8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개 등의 기상악화나 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등의 원인이 경합한 사고는 업무외재해로 판결하였다.⁴³⁾ 이들 사고는 모두 혈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 이후부터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판결을 찾기가 쉽지 않음도 주목할 만하다.

IV.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1. 음주운전 사고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여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상한 경우 업무상재해의 판단은 먼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중의 업무수행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교통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도 인과관계가 있는가이다. 전자를 책임설정적 인과관계라고 하고 후자를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라고 한다.⁴⁴⁾

그러나 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는 그 사상이 기왕증으로 인한 악화 등이 아니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교통사고와 사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이다. 책임설정적 인과관계는 사고의 발생이 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⁴⁵⁾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발생에 선행한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

42) 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29373 판결

43)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44)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유성재,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5~125쪽 참조.

45) 박종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고찰 -입법기술적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4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147쪽.

될 것이지만,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항상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⁴⁶⁾

음주를 한 뒤에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사고나⁴⁷⁾,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2차 회식을 한 뒤에 귀사를 위한 자신의 승용차 운전행위⁴⁸⁾는 근로자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음주를 하였어도 자동차 운전이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의 복무의무 위반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⁴⁹⁾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⁵⁰⁾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시간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⁵¹⁾

문제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이나 사망한 때이다. 근로자의 사상이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라면 범죄행위가 되어 업무외재해가 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상은 일반적인 재해 유형과는 달리 책임설정적 인과관계도 업무상재해의 판단에 중심에 있지는 않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범죄행위가 되어 업무외재해가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성 여부를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한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46) 대법원 1990. 10. 23. 88누5037판결

4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4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4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5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5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의사를 말한다.⁵²⁾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면 업무수행성 인정된다고 하여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자명할 것이다.⁵³⁾

자해행위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⁵⁴⁾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본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도 없어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곧 업무외재해로 해석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곧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즉,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행위가 재해발생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해석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보험급여 수급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 금지 사유가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⁵⁵⁾

산재보험법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판례도 초기에는 업무수행성 중심으로 판단하였지만,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⁶⁾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서도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한 것과 상통한다.

3. 원인이 경합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발생한 사상이 음주운전만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다른 요인과 경합하여 발생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

52) 이상국, 『산재보험법(1)』, 대명출판사, 2012, 327쪽.(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와 자해행위의 구분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근로자의 자해행위에는 고의가 내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3) 김수복, 『업무상재해의 이론과 실제』, 중앙경제사, 1995, 120쪽.

54) 이상국, 『산재보험법(1)』, 327쪽.

5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5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문제이다.

(1) 원칙적 인정설

교통사고는 기상사정이나 도로여건과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함으로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운전직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운전직 근로자가 운전 중에 자살을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취상태에서 상급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업무외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⁵⁷⁾

산재보험법은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가를 기준으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사전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유발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라 하여 예외나 특혜를 줄 수 없을 것이며, 고의·자해행위는 그 자체가 업무외재해임을 산재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다를 문제도 아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과실성 사고는 인정하고 고의성 사고에 한하여 제한하자고 하나, 법원은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하며,⁵⁸⁾ 음주운전은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 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도 아니다.⁵⁹⁾

(2) 사고원인 규명설

음주상태가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음주를 하였지만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항상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사고발생과

57) 구건서, 「음주운전을 했어도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노동』 제320호, 한국산업훈련협회, 2001, 62쪽.

5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59)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상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업무상재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경위가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법칙상 음주가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⁶⁰⁾ 이 견해는 독일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⁶¹⁾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무리한 면이 있다.⁶²⁾ 그리고 음주상태가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준에 미달한다면 특이한 체질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초기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통상적 위험범위 내의 사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근로자에게 상당히 관대하다가 점진적으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에 음주 이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피로, 짙은 안개, 갓길에 정차된 차량’ 등의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외재해로 판결하고 있다.⁶³⁾

그러나 음주상태에서 조기 출근하다가 발생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다.⁶⁴⁾ 이 사건은 음주운전보다는 불가항력적인 도로결빙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으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회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금지는 엄격하여야 한다. 재해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하지 않고 생존권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내쫓는 것이기 때문이다.

60) 전광석, 앞의 책, 379쪽.

61) 독일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법적 보호가 일률적으로 부정되고, 운전능력이 의심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혈중 알콜 농도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반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법적 보호가 부여된다.”고 보고 있다.(BSGE 53, 215; 45, 293; 34, 261; 12, 422 등 참조(전광석, 앞의 책 379쪽, 주44)에서 재인용함).

62) 김진수, 앞의 글, 275쪽.

6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64) 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29373 판결.

범죄행위 즉,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의 판단은 사고의 원인이 경합된 때에도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보험사고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사고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금지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보상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국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면, 산재보험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하여 재해근로자를 사회보험 밖으로 내몰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이념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사회적인 위험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음주운전의 폐해를 예방하려는 사회적인 요구와 국가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근로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업주도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각심과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상은 업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명시 규정의 도입도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⁶⁵⁾

65) 김진수, 앞의 글, 280쪽.

참고문헌

- 구건서, 「음주운전을 했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노동』 제320호, 한국산업훈련 협회, 2001.
- 김수복, 『업무상재해의 이론과 실제』, 중앙경제사, 1995.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 김정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형사법연구』 통권39호, 한국형사 법학회, 2009.
- 김진수, 「음주로 인한 산재사고의 급여제한 방안에 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III)』, (주)박영사, 2010.
- 박종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고찰 -입법기술적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4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 박세민,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대상으로-」, 『경영법률』 제13집 제1호, 사단법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2.
- 소건영,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인권과 정의』 제43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 유성재,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제 연구』 제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이상광, 『(개정판)사회법』, 박영사, 2002.
- 이상국, 『산재보험법(1)』, 대명출판사, 2012.
- 이상국, 『산재보험법(Ⅱ)』, 대명출판사, 2012.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10판)』, 집현재, 2014.
- 정흥기 /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험 수급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사회보장법학회, 2013.
-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자의 음주와 안전』, 2006.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3/>),
검색일 : 2016. 3. 20.
- 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31003>),
검색일 : 2016. 4. 25.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977.html>, 검색일 : 2016. 5. 9.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news.joins.com/article/20265258#none>>, 검색일 : 2016. 8. 4.

접수 : 2017. 1. 31 심사 : 2017. 2. 17 게재확정 : 2017. 2. 22

Abstract

Compensation and Accidents from Drunk Driving

Whang Woon-he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gards laborer's death from crime or cause of crime as non-occupational accidents, and so, it does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as the government is not obligated to protect any death related to criminal act with social disapproval. One of criminal acts banned from accident compensation is drunk driving. Regardless of laborer's compensation, accident from drunk driving is an anti-social crime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Acknowledging laborer's death from drunk driving as occupational accident with broad criterion may lea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embracing drunk driving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However, judging laborer's accident compensation by overstrict standards may also ignore the philosophy of social insurance that is to protect laborers from social danger. Therefore, occupational accident from drunk driving requires balanced judgment between punitive measures and social protection.

key words : Occupational Accidents, criminal act, drunk driving, insurance benefit, accident compensation.

* Ph. D. / C. P. L. A.